

• 특집 — 2010년 지방재정세제 전망 및 운용방향



2010년 지방세 정책 방향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변 성 완

I. 들어가며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한해를 맞았다. 새해를 맞아 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미국발 금융악재로 인해 전 세계가 지난 60년래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로 힘들었던 한 해였다. 이의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는 과감한 재정 확대, 적기의 국제공조 등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였고, 다행히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국가적 위기 탈출 노력에 부응하여 자치단체 차원의 재정지출 확대, 재정 조기 집행 등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지방세 분야에서도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함은 물론,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및 지방세법 분법 등 지방세 체계 선진화를 추진하여 위기 너머 미래에 대비하려 하였다.

이하에서는 지난 한 해 우리 부의 지방재제 정책추진 성과를 되짚어 보고,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금년도 지방세 정책 방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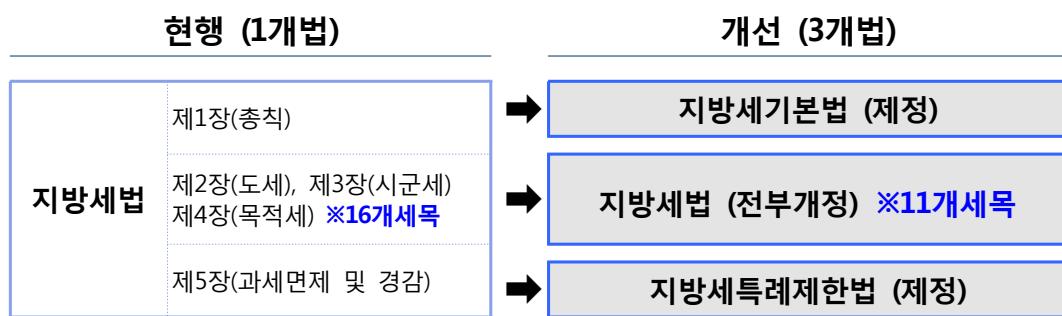
Ⅱ. 2009년 주요 성과 및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소개

1. 2009년 정책 성과

작년 최대의 성과로는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첫 손에 꼽을 수 있다. 길고도 지루했던 산통 끝에 국회에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금년 1월 1일부로 첫 시행이 이루어졌다. 규모나 성격 면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충분히 보전할 정도는 되지 못하지만 그 큰 결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가치를 가진다 하겠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지방소득세·소비세 제도가 지방자치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의 의미는 더욱 크다.

둘째, ‘지방세법 분법’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선진적인 지방세 체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61년 전면개정 이후 유지되어 온 복잡하고 후진적인 지방세법 체계를 분야별·기능별로 체계화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공통적·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의 종류 및 세목체계를 규정한 ‘지방세법’, 지방세 감면규정을 통합·정리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률로 나뉘게 된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수요자 중심의 선진제도 도입,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중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2011년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분법체계 개념도〉



셋째, 선제적 지방세 감면을 통해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였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거래세 감면을 1년 연장하며 전국으로 확대하고, 미분양 펀드·리츠 및 토지공사의 기업 부채상환용 토지 매입시 감면을 실시하여 경제 활성화에 일조

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후차량 교체 시에 취·등록세를 70%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였다.

2. 2010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지방세법 분법안 기틀 마련,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방세 분야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금년부터는 지방세 체계에서부터 납부서비스 혁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가 이뤄진다.

1)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세 세목 변경

앞서 기술한 대로, 지방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지방소득세·소비세가 도입됨에 따라 국세가 지방세로 일부 이양되면서 지방세 세목과 세수가 달라진다. 우선 국세인 부가 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지방소비세’라는 신규 세목이 신설된다. 지역경제와 지방 세수의 연계를 통해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실현하면서도 부과·징수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여 세목 신설에 따른 국민의 추가적인 납세 불편이 전혀 없도록 하였다. 2010년 세입예산안 기준으로 약 2.4조원 규모인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수준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 시·도에 배분된다. 그 결과 지방에 약 1.9조원이 순증 지원되어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증가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다소 개선되는 구조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득세는 현행 ‘소득할 주민세’를 전환하여 도입되며, 소득과세 성격을 지닌 ‘종업원할 사업소세’도 지방소득세로 편입된다. 이와 함께 주민세 중 ‘균등할 주민세’와 사업소세 중 ‘재산할 사업소세’는 균등과세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주민세’로 통합된다. 결과적으로 종전의 ‘사업소세’는 폐지되는 셈이다. 세목을 재편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면서도, 납세자의 불편과 징세행정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과표와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향후 3년간 심층적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지방소득세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년에는 농업소득세도 폐지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가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과세를 중단했던 농업소득세가 명목상으로도 폐지되는 것이다. 세목 폐지의 배경에는 영세 농가 지원 및 국가의 농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데 반해, 징세비용에 비해 세수 규모가 영세



하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2) 지방세 납부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지방세 납부도 훨씬 쉽고 다양해진다. 지금도 인터넷·신용카드 납부 및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종이고지서(OCR)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방식이 일반적이다. 또 전자납부제가 개별 자치단체별로 추진되어 사용가능한 카드와 은행이 제한적이며 이용수수료 부담도 컸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화 온라인 수납체계를 구축하여 종이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ATM에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또 실시간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어느 지역이든, 어느 은행이든 자동이체를 할 수 있고,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며, 수수료도 전면 폐지된다. 이런 결과로 국민의 납세관련 불편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조세행정의 효율도 높아지며, 납세자·과세관청·금융기관 전반의 납세 순응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간에 온라인을 통해 납세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지방세 납부와 동시에 납부 사실을 과세관청 및 관계기관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등기소, 특허청, 각종 인·허가 부서에서 납세영수증 없이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 등을 즉시 처리할 수 있게된다. 지방세 납부사실 확인에 일주일 이상 소요되었던 과거와 달리,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온라인 지방세 납부체계 구축〉

구 분		현 재 (OCR처리)	개 선 (온라인방식)
기본과정		자금 : 납세자→은행→금고→시 납세정보 : 납세자→은행→OCR센타→시 ※ 납세정보는 OCR로 이동 (오프라인)	자금 : 납세자→은행→금고→시 (자동) 납세정보 : 은행↔통합수납센터 ※ 납세정보는 온라인으로 즉시 처리
처리비용		3,216억원 - OCR 처리비용, 물류비 등	212억원 - 납부안내 일반우편료
소요 기간	자금이체	수납 1주일 후 금고로 이체	자동
	OCR처리 (납부·소인처리)	7~14일 소요 (최장 30일) ※ 소인처리전까지는 미납상태	납부 즉시 소인처리
OCR처리 소요인력		각 자자체별 5~7명 내외 - 과세관청 2~3명, 금고 3~4명	없음

3) 지방세 감면 확대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 혜택을 1년 연장한다. 취득세·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인하하는 거래세 감면 시한이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국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더 연장한다.

그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여 농지매입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업경영의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어업회사법인이 유통·가공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 경감 조치를 실시한다. 대학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경감한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매년 자치단체가 직전년도 감면액과 당해연도 감면예상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시하는 제도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과세특례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III. 2010년 지방세 정책 추진방향

1. 미래지향적 친환경·친서민 지방세 패러다임 구축

최근 전 지구적 자원·에너지 위기가 도래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등 세계와 관련한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혁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금년에는 세계 차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해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부는 지방세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행 배기량 기준인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연비 또는 탄소배출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며,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 방안도 구체화하여 1월 말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지방세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해나갈 것이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최하위(현 1.19명)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 관련 지방세 지원방안 역시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러한 친서민 패러다임의 연장성 상에서 금년 한해 세정일선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중 지속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2010년 지방세 정책 추진 방향〉

<2010년 핵심미션>

미래를 선도하는 실용적인 선진 지방세제 구축



정 책 방 향

**미래지향적
지방세 패러다임 구축**

**선진적인
지방세 체계 확립**

**생활밀착형
실용세정 구현**

**지방세정 운영
관리기능 강화**

주 요 정 책 과 제

- 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
- ②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세제 지원
- ③ 건전하고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신세원 도입
- ④ 선진화된 지방세 세목체계 마련
- ⑤ 지방소득세·소비세 조기정착 및 발전방안 마련
- ⑥ 재산세제의 합리적 개편
- ⑦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의 선진화
- ⑧ 납세자 친화적 납부시스템 및 서비스 혁신
- ⑨ 선진 민원행정을 위한 납세정보 공유기반 구축
- ⑩ 지방세 체납 집중관리 등 과세기반 확충
- ⑪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선
- ⑫ 지방세 통계분석 기능·역량 강화

2.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 체계 확립

금년도 업무에 있어 지방세수 감소 전망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과 더딘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금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받는 지방소비세가, 향후 3년간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에는 5%를 추가 이양받는 등 국세와 지방세간 비중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단계적으로 진행해갈 것이다. 더불어 적실성 있는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지역별 소비지표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201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방세법 분법도 60년 지방세법사를 바꾸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개정안에 반영된 세목체계 간소화 및 새롭게 신설된 납세자 중심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1년간의 준비기간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체제하에서 세정 운영 상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하위법령과 조례를 정비하고 세목변화에 맞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대국민 집중 홍보와 세무공무원에 대한 순회 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3. 납세자가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실용적 세정 구현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지방세체제 개편 등 거시적인 지방세 제도개편이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 실제 납세자인 국민들에게는 납세시스템 개선과 같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이 더욱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에 우리부는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서도 더 많이 노력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언제라도, 다양한 결재수단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한 납세자 친화적 납부시스템을 구축하고 납세서비스 혁신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각종 부담금·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관리체계를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2010년에는 세외수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처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방세입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동일할 절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지방세정 운영의 관리기능 강화

지방세정운영의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고소득자의 체납 및 고의적 탈루·은닉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체납액 징수목표를 전년도 목표 6819억원에서 금년 9480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약 26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나갈 것이며, 효율적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소득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을 위한 전자공매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탈루·은닉에 대한 과학적 기법을 발굴·전파하는 등 체납·탈루·은닉이 발 볼일 수 없는 세정환경을 구축하여 지방세입 증대 및 공평과세 구현을 실현하겠다.

아울러, 최근 몇 차례 발생했던 세정비리에 대한 근원적 대안으로서 관리·감독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상시모니터링 대상을 '09년 16종에서 금년 30종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수작업 결재과정에서의 비리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자결재 대상 업무를 '09년 6종에서 올해 9종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적 비리예방책에 힘입어 향후에는 지방세정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계분석 역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세수추계 역량제고 등을 위해서는 지방세 관련 통계 분석 기능의 강화가 필수적인바, 관련 제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가는 한편, 세정일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계지표를 선정·보급하는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통계분석 기능의 강화를 통해 정책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IV. 결어

금년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2011년부터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긴장을 늦

추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이번 2010년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우리 부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불합리한 지방세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있도록 도울 것이다. 더불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납세제도 개선도 중점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다.

올 한해도 우리 부가 추진하는 지방세 정책에 관련 담당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새로운 지방세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나아가 지방재정이 견고해지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